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2일, 조지연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지연의원)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m²,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 조문대비표]

– 3 –

<u>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u>	
<u><신 설></u>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u><신 설></u>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u><신 설></u>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u><신 설></u>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u><신 설></u>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u><신 설></u>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적시설
<u><신 설></u>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u><신 설></u>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 용도 제한의 절차·방법, 제한 기간 및 안전기준 등 토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54조¹⁾는 사용종료(폐쇄)된 매립시설이 침출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건강 또는 재산,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종료(폐쇄) 후 30년 이내에 해당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용도를 수목의 식재·초지의 조성 또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토지 용도 제한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여의도 면적의 3.4배인 995만 5,740㎡(민간 171만 4,147㎡, 공공 824만 1,593㎡) 규모의 전국 사후관리 대상 종료 매립장의 토지 이용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종료 매립장 상부토지에 주차시설, 야적장²⁾,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 확대에 인한 안전

1) 「폐기물관리법」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및 환경 위해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³⁾·토지이용계획서 검토⁴⁾ 등을 통해 인·허가기관이 토지의 용도 및 용도제한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제69조의2·제70조 및 제71조 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신고 시 사후관리계획서 제출·승인, 사후관리 기준·방법 준수, 3년 주기 정기검사,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벌칙 조항 등 사후관리를 통해 사용종료 매립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매립시설의 경우 침출수,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방역, 주변환경영향 등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매립시설 사후관리 기준·방법 요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구 분		사후관리 기준	
침출수 관리수위		2m 이하	
침출수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	대상항목	BOD, COD, 총질소, 페놀류, 중금속류 등 28개 항목	
	측정주기		분기 1회
	보고주기	분기 1회	분기 1회
	예외사항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옮겨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필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	관리계획	·축대벽, 독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 관리계획 수립·시행 ·사면이나 최종복토층 손상 우려에 따른 방지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지반침하 여부 관측(연 2회, 면적 1만㎡당 측정점 2개소 이상 ※ 지표면이 일정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	
방역		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계획 수립·시행(월 1회 이상 방역 실시)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대상항목 및 주기	침출수(분기 1회), 지하수(분기 1회, 최초 3년 월 1회), 해수(분기 1회), 발생 가스(연 1회, 최초 5년 분기 1회), 구조물 및 지반 안정도(연 2회), 지표수(반기 1회), 토양(연 1회)	
	보고주기	매 5년 작성·제출	

자료: 환경부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①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은 환경 안전성 및 지반의 구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가 확대되더라도 환경 및 지반의 구조 안전성 검토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⁵⁾은 소각시설·처분시설 등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에 해당하는데, 작업의 고위험성이 예측되는바, 지반의 구조 안정성 보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차시설·물류시설 등의 경우 시설물 설치·이용 시 환경·안전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51조⁶⁾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⁷⁾ 할증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5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7) 사후관리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주민안전 위험 및 환경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의무가 있고, 2023년 말 기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 대상은 운영 중인 매립장 73개소, 사후관리 매립장 74개소로 누적적립액은 현금 516억원, 보험 3,844억원, 담보물 234억원 등 총 4,594억원 규모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누적적립액(2023년 말 기준)]

셋째, 동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및 한국 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시설 등 부대시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폐기물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조건⁸⁾ 중 하나로, 매립장 상부에 ‘폐기물처리시설’만 설치 가능할 경우 폐기물처리업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 이용 용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추가될 경우 폐기물보관시설 등 부대시설이 함께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단위 : 억원)

구분	현금	보험	담보물	합계
운영중	268	2,991	228	3,487
사후관리	248	853	6	1,107
합계	516	3,844	234	4,594

자료: 환경부

8) 시설 및 장비(처분시설, 보관시설, 계량시설, 수집·운반차량 등), 기술능력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